

大學入試 자율성과 大學別 考查

張 錫 祐
(仁川大 教育學科)

1. 되찾은 學生 選拔權

'94 학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인 새로운 大學 入學 試驗制度는 대학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시켜 주고 있다. '80년의 소위 7·30 教育改革으로 '81 학년도부터 大學 本考查가 폐지되면서 원천적으로 봉쇄된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의 자율성이 실로 14년만에 되살아 나게 된 것이다. 물론 '86~'87 학년도에는 대학별로 論述考查를 실시한 바 있고, '88 학년도 이후에는 先志願·後試驗 제도의 실시로 대학에서 입학 시험을 관리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것으로 학생 선발권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이 허용되었다고 하기에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이다.

현행의 入試制度 속에서 대학이 행사할 수 있는 자율성이나 융통성의 폭은 극히 한정된 것이다. 고등학교 내신 성적의 반영 비율을 30% 또는 그 이상으로 채택하는 것, 學力考查 科目 중 일부 과목의 응시를 필수화하는 것(예컨대 제2 외국어의 선택) 또는 특정 과목에 대하여 加算點을 주는 것, 面接의 결과를 10% 이내에서 點數化하거나 當落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師範大의 경우) 등 몇 가지 사항에 국한되고 있다. 새로운 入試制度에서는 이러한 대학 측의 요구 사항이 거의 전부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入試制度에서 활용할 수 있는 銓衡資

料는 고등학교 內申成績, 大學修學能力試驗 및 大學別 考查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중 고등학교 내신 성적은 入試査定 총점의 40% 이상을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다른 자료들은 대학의 자율에 따라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대학별 入試의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 네 가지 중 하나가 된다.

- 고등학교 내신 성적만을 활용하는 방안
- 고등학교 내신 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활용하는 방안
- 고등학교 내신 성적과 대학별 고사를 활용하는 방안
- 세 가지 전형 자료 전부를 활용하는 방안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 전형 자료의 反映比率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40% 이상 반영하는 것 이외에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실제로 대학마다 서로 다른 入試 방안이 가능하게 된다.

학생 선발권에 대한 이러한 자율성의 확보는 분명 바람직하고 환영할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대학에 주어진 이러한 자율성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신중한 고려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깊이 인식되어야 한다. 學生 選拔權은 대학의 '權限'임에 틀림없지만, 그 권한에는 막중한 社會的 責任과 公共性이 함께 요구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大學入試制度는 대학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이 나라 전체 敎育制度의 한 부분이며, 나아가 온 국민에게 관련되는 社會制度의 성격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2. 大學別 考查의 性格 및 意義

1) 大學別 考查의 性格 및 類型

새로운 대학 入試制度에서 大學別 考查는 “대학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대학의 특수성이나 專攻系列 또는 學科의 특성상 별도의 대학 修學能力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실시하는 대학별 선발고사이다”(朴道淳 外, 1989).

고등학교 내신 성적은 고등학교 3년 간의 學業成就度를 측정한 ‘現在의 能力’을 대표한다.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고등학교 3년 간의 학업 성취를 바탕으로 형성된 高次的 精神能力을 측정하는 데 목표를 두며, ‘未來의 可能性’ 또는 ‘潛在的 能力’을 밝히는 데 강조를 두게 된다. 이에 비하여 대학별 고사는 각 전공 계열이나 學科의 교육에 필요한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특수한 영역의 특정한 능력이나 특성을 밝히는 데 강조를 둔다. 이를 통하여 대학 입학 전형의 妥當度를 보다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大學別 考查의 類型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專攻基礎試驗이다. 전공 계열이나 학과의 修學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과목에 대한 능력 수준을 측정하는 學力考查이다. 예컨대 화학과 지원 수험생에게 化學 시험을 별도로 실시하는 경우이다. 둘째, 實技考查 또는 實驗考查이다. 체육·음악·미술 등 실기 능력이 중요시되는 전공 계열에서는 실기고사가 시행되고 있다. 같은 필요성에서 실험·실습 능력이 중요시되는 전공 계열에서는 적절한 형태의 실험능력 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셋째, 面接 또는 口述試驗이다. 대학 또는 학과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포함하는 다양한 전형 자료가 활용될 수 있다. 최근 師範系 대학이나 학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敎職 適性의 파악을 위한 면접이나 구술 시험이 대표적인 예이다. 넷째, 特別銓衡이다. 예·체능계 특기자나 산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별 전형 등이 이에 속한다.

2) 大學別 考查의 意義

대학별 고사의 부활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대학이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학생을 책임있게 선발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장 중요한 자율성의 한 부분을 되찾게 되었다는 점이다. '81년 이후 철저히 봉쇄당한 학생 선발권을 회복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며, 우리 사회 전체의 民主化·自律化 추세에 발맞출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도 있다. 그리고 대학의 學科 설치, 定員의 조정 등 교육 운영 전반에 걸친 國家의 통제와 관할로부터 대학이 서서히 自由의 폭을 넓혀 가는 중요한 진전이라는 의미도 함께 갖는다.

둘째, 대학의 특수성이나 전공 계열 또는 學科의 특성에 알맞은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게 됨으로써 適格者 선발 기능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입학 시험을 통해 대학이 선발하고자 하는 것은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한 학생’이 아니라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는 학생’이며, 막연한 ‘학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國語 國文學科, 電子工學科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일이다. 適格者 선발을 위하여는 일반적인 修學能力은 물론, 특정 전공 영역이나 학과에 대한 특수한 능력과 함께 適性이나 흥미 또는 특수한 經驗이나 인성적 특성도 요구될 수 있다.

셋째, 대학별 고사는 입시 전형 자료를 보다 다양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입학 시험의 妥當度를 높여 준다. 입학 시험의 豫言妥當度를 높이기 위해서는 입시 전형 자료의 다양화가 요구되는데, 대학별 고사는 고교 내신 성적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만으로는 평가되기 어려운 영역의 능력이나 특성을 밝힐 수 있게 해준다.

3. 大學別 考查 施行의 基本方向

대학별 고사의 시행은 대학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대학의 權限 행사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이나 권한의 행사가 대학교육 발전의 계기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대학별 고사의 채택 여부는 각 대학의 전반적인 入試政策과 관련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새로운 대학 入試制度에서는 대학이 폭 넓은 자율성을 가지며, 대학별 고사는 그것의 한 부분이다. 그동안 우리 대학들은 教育部가 제공하는 원칙에 따라 선택한 入試要綱이 있었을 뿐, 대학의 입학 시험 정책을 종합하는 入試政策은 가질 수 없었다. 이제 모든 대학은 본격적으로 대학의 특성과 教育精神을 반영한 대학 특유의 入試政策을 개발해 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 대학의 特性이나 設立 理念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대학의 제반 여건과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대학의 제반 여건에 비추어 '우수한 수험생'을 유치 또는 선발할 수 있는 타당한 銜衡方法을 찾아 내는 일이 될 것이다. 고등학교 내신성적의 활용 방법도 다양화될 수 있으며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결과도 여러 형태로 활용될 수 있다. 대학별 고사는 각 대학이 '의무적으로 치러야 하는 시험'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는 시험'임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별 고사의 실시에 있어서는 그것이 고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그동안 대학 입학 시험 제도와 관련하여 꾸준히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고, 일종의 社會的 病理現象으로까지 대두되었던 것은 그것이 고등학교의 교육과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했기 때문이었다. '81년부터 大學 本 考査가 폐지된 결정적인 요인의 하나는 그것이 고등학교 교육을 파행적으로 이끌고 過熱課外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었다. 대학 본고사의 시험 과목 수가 대체적으로 너무 많고, 특히 고등학교 教育課程의 정신이나 범위를 벗어난 출제가 빈번했던 것은 크게 반성되어야 할 일이다.

새 入試制度에서는 대학 입시에 관련되는 여러 變因이나 利害 당사자 중 大學의 입장이나 자율성이 가장 비중있게 다루어졌다. 그러나 이 제도가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보이게 될 때 고등학교와 모든 수험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엄청난 반발이나 저항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러한 반발이나 저항을 극소화하고 모처럼 되찾은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는 대학별 고사의 채택 범위나 출제 과목 수 등을

최대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출제 경향에 있어서도 고등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셋째, 대학별 고사의 실시에 있어서 모든 대학은 社會的 公共性을 깊이 인식하고 國民의 信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방 이후 '60년대까지 학생 선발권에 있어서 대체로 폭 넓은 자율권을 가지고 있었던 대학들이 '60년대말 이후 크게 위축되었다가 '80년대에 들어서서 철저히 봉쇄당하는 수모를 겪은 것은 한 마디로 自業自得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비록 '일부 대학'이라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특히 적지 않은 私立大學에서 단성적으로 저질러 온 온갖 入試 不正 非理가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박탈'당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시대적 조류라 할 수 있는 民主化·自律化의 물결에 따라 대학별 고사의 '권리'를 되찾기는 하였지만, 그 권리에는 막중한 社會的 義務가 수반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넷째, 대학별 고사의 출제 및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충분한 기초 연구와 出題技術의 향상을 위한 경험 축적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대학교육 適格者 선발이라는 목표에 비추어 妥當度(특히, 豫言妥當度)와 信賴度가 높은 問項을 출제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고등학교 교육에 미칠 영향까지를 고려하여 출제하는 일은 높은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大學에서는 研究 팀을 구성하여 광범한 기초 연구와 함께 출제 기술의 향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4. 大學別 考査의 施行方案

1) 專攻基礎試驗

전공기초시험은 대학별 고사의 실질적인 核心이라 할 수 있다. 실기·실험고사나 면접 및 구술고사는 현행 제도에서도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에 비하면 전공기초시험은 새로이 도입되는 동시에 모든 수험생에게 시행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공기초시험의 채택 여부, 출제 과목 및 출제 방법, 전형에서의 반영 방법 및 그

비율 등은 원칙적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고사 시행의 기본 방향’을 고려하면서 그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기초시험은 專攻系列이나 學科의 특성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교 내신 성적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자료만으로는 평가될 수 없는 특정한 科目이나 영역에 대한 능력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만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독어독문학과에서 독일어 능력을 확인하거나, 물리학과 수험생에게 물리 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이다. 人文·社會系列 大學 수험생에게 일률적으로 국어와 영어 시험을 치르게 한다면, 自然·工學系列 大學 수험생에게 수학과 과학을 필수적으로 부과하는 식의 시행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 것이다. 入試 선발의 기본적인 目標은 敎育 適格者의 선발이며, 이를 위하여는 고교 내신 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결과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둘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은 言語, 數理·探究 및 外國語(영어) 領域으로 구성되고, 그중 探究 영역은 科學探究 및 社會探究 영역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대학입학학력고사와는 달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결과는 총점과 함께 영역별 점수도 밝혀지게 된다. 따라서 대학의 入試 전형에서 영역별로 적절한 加重值를 부여함으로써 필요한 능력을 지닌 수험생을 가려낼 수 있다.

셋째, 전공기초시험이 고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각 대학의 入試査定에서 전공기초시험이 차지하는 比率는 가급적 낮게 책정되고, 시험 과목 수도 전공 계열 또는 학과별로 1~2개 이내로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공기초시험의 반영 비율이 높고 시험 과목 수도 3과목 이상이며, 더구나 전공 계열에 따른 시험 과목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내신 성적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상대적으로 무시한 채, '70년대의 경우처럼 '○○大班', '□□大班'을 편성하여 학교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학교 밖에서의 課外授業이 또다시 과열 현상을 빚게 될 것이다.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전공기초시험의 반영 비율을 20~30% 정도로 낮춘다고 할지라도 入試査定에서는 훨씬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대학의 入試査定에서 중요한 것은 각 전형 자료가 入試 總點에서 차지하는 점수의 比重이 아니라 각 전형 자료가 차지하는 ‘실질적인 比重’이다. 소위 名門大學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名門大學 응시생들의 內申成績은 거의 대부분이 1~2등급 수준이기 때문에 40% 이상이라는 반영 비율은 별 의미가 없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을 보더라도 合格線에 드는 수험생들의 點數分布는 20~30점 선을 넘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전공기초시험은 대체로 主觀式 출제로 될 가능성이 크고 點數의 變數이 크도록 출제될 것이다. 예컨대 300점 만점이라 할 때 점수 분포는 최소 100점에서 200점 정도로 확대될 수 있다. 이때 入試査定의 실질적인 결정은 전공기초시험에 의해 좌우된다. 만약 고등학교 교육이 또다시 파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 빚어진다면, 그것은 대학 入試制度 개선의 ‘참뵈’과는 크게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칫 새 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전면 再檢討되는 운명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전공기초시험의 출제 내용과 형식은 고등학교 敎育課程의 수준에 충실하되, 高次元의 能力을 측정하는 主觀式 출제 형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고등학교 교육이 더이상 암기 위주, 단편 지식 위주의 교육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전공기초시험은 학생들에게 불가피하게 부담을 주지만, 이러한 부담과 경쟁이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것이 되도록 이끌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차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主觀式 문제가 출제된다면 수험생들의 能力差를 보다 더 의미있게 辨別할 수 있으며, 나아가 入試 선발의 妥當度를 높이는 데에도 공헌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 전공기초시험의 출제 작업도 대학 단독으로 수행하기보다 中央敎育評價院의 문항을 활용하거나 여러 大學이 연합하여 공동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전공기초시험의 출제 작업은 결코 손쉬운 작업이 아니다. 해당 과목

에 관한 教科專門家 못지 않게 教育評價 전문가의 참여도 필요하며, 고등학교 교사에 의한 事前 검토도 빼놓기 어려운 절차이다. 또한 출제 계획으로부터 출제 작업, 그리고 인쇄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도 치밀하게 典型化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출제 작업에 따른 예산의 지원과 출제 및 인쇄 과정에서의 保安 유지도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특히 새로운 入試制度의 시행 초기에는 中央教育評價院이 개발·제공하는 문제를 활용(수정·보완하여 활용하는 방안 포함)하거나, 여러 대학이 연합하여 공동 출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로부터의 信賴를 얻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기타 大學別 考査

새로운 대학 入試制度에서는 전공기초시험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전형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중 중요한 사항만을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 藝·體能系 대학이나 학과에서 실시하는 실기고사 이외에도 科學 등 實驗·實習能力이 중요시되는 과목에 대하여는 실험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예컨대 自然科學大學 수험생들에게 과학적 探究能力을 평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어떤 형태의 실험조건을 제시하고 이의 처리 과정을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대학의 특성이나 전공 계열 또는 학과의 특성에 따라 면접이나 구술고사 또는 기타의 전형 방법이 활용될 수도 있다. 이미 실시되고 있는 師範系 대학이나 학과에서의 교직 적성·인성 검사를 위한 면접 고사는 좋은 예가 된다. 또한 神學大學 등과 같은 특수 목적의 대학에서도 면접이나 구술고사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면접이나 구술고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에 필요한 전형 자료는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다.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하여 고교 3년 간의 활동 실적을 크게 고려할 수 있으며 高等學校長의 추천서와 수험생 본인의 지원 所

見點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도 있다.

셋째, 特別銓衡의 대상과 방법도 더욱 확대된다. 그동안 예·체능계에 국한되어 있던 特技者의 범위가 文學·語學·數學·科學 등의 분야에도 적용된다. 이에 관하여는 앞으로 教育部가 적절한 기준과 방법을 제시할 터이지만, 해당 분야에서 국제 대회 또는 국내 대회의 일정 수준 이상의 入賞者 등이 포함될 것이다.

5. 大學의 課題

새로운 대학 入試制度는 대학에 대하여 폭 넓은 自律性을 부여해 주고 있다. 실로 14년만에 되찾은 학생 선발권의 회복이며, 대학교육 전반의 民主化·自律化를 위한 큰 변화에로의 획기적인 진전이기도 하다. 入試制度 개선을 위한 그동안의 논의 과정에서 꾸준히 주장되었던 몇 가지의 制限 조건들이 대부분 철회되고, 그 모두가 대학의 '自律적인 결정'으로 위임되었다. '인재가는 와야 할 현상'이 과도기를 생략한 채 일시에 다가왔다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분명 바람직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한편 모든 대학이 떠맡은 무거운 짐이기도 하다. 이제 고등학교(심지어는 중학교, 국민학교까지도) 교육에서 빚어진 많은 문제점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를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더욱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게 될 것인지 모든 대학의 '자율적인 결정'의 결과에 좌우되게 되었다. 또한 사회 제도의 중요한 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 대학 入試制度가 社會의 公共性을 유지하면서 모든 계층의 國民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공헌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대학의 '선택'에 달려 있다.

모든 대학은 학생 선발권의 회복을 '權利의 회복'으로 받아 들이기에 앞서 '社會的 責務'로 이해하는 신중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담 研究 팀을 구성하여 각 대학 나름의 入試政策을 깊이있게 연구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